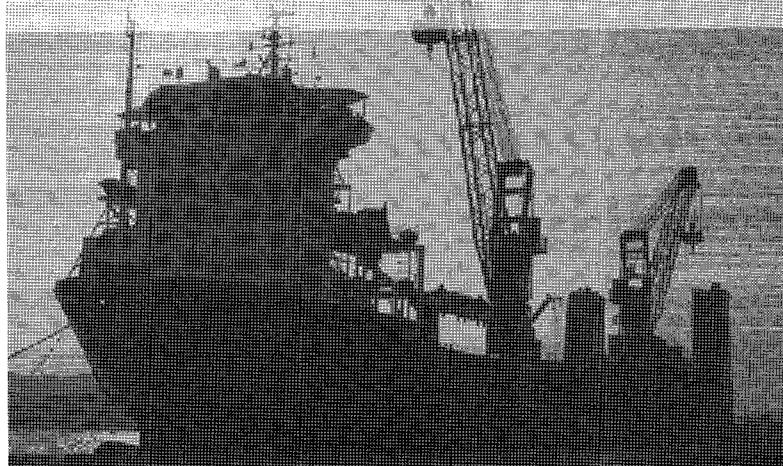


D-Day는 2005년 1월 1일

-협상의 진전 현황과 쟁점 사항-



DDA협상의 시작은 순조로웠던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분야에 따라서는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분야도 있는 등 원래 정해진 시한내 협상타결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도 적지 않다. 협상을 어렵게 하는 쟁점 사항은 무엇이고 진전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편집자주〉

1. 협상의제의 일반적 성격

도하 각료회의에서 DDA 협상을 위해 합의된 의제는 원래 의도했던 바와 같이 매우 포괄적이면서도 비교적 균형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농산물, 서비스와 같은 기설정의 제는 물론 공산품 무역자유화와 반덤핑 등 WTO 규범분야 그리고 일부 환경분야까지 포함되었고 투자, 경쟁정책과 같은 새로운 의제들도

제5차 각료회의 이후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으로써 당초 목표했던 대로 광범위한 의제를 다루게 되었다.

이는 무역자유화의 혜택이 회원국간에 균형 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국경조치의 자유화를 넘어서는 이러한 심층적 통합을 위한 무역협상은 협정의 결과가 국가간 승자와 패자를 구분할 수 있다.

예컨대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

협정은 국내적 기술혁신의 기반이 없고 해외 기술의 도입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국가들에게는 부정적 효과가 클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국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적재산권 협정에 참여할 동기가 없으며 따라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포괄적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

예컨대 UR 협상에서 개도국들이 지적재산권(TRIPs) 협정에 참여했던 것은 개도국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다자간 섬유협정이나 반덤핑 등이 그 협상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DDA 협상의 제도 부분적으로는 국가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부분이 없지 않으나 전체적으로는 원-원 게임이 될 것이며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무역 환경 속에서 다루어져야 할 대부분의 현안들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다면 DDA 협상에서도 종전과 같이 ‘모든 것이 타결되기까지는 아무 것도 타결된 것이 없다’는 일괄 타결원칙(single undertaking)을 채택하고 있어 광범위한 조정과 태협에 많은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한편 타결에 보다 긴 시간을 요할 수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이와 관련 도하각료선언문은 전

체 협상의 시한을 2005년 1월 1일 이전까지로 3년의 시한을 정하고 있어 7년 3개월이 소요된 UR 협상에 의해 단기간 내 협상 종결의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전체 협상의 시한과는 별도로 DDA 협상은 농업협상(세부원칙의 수립시한: 2003년 3월 31일, 양허안 제출시한: 제5차 각료회의), 서비스협상(양허안 요청시한: 2002년 6월 30일, 양허안 제출시한: 2003년 3월 31일), 이행 문제(검토 결과 보고 시한: 2002년 말), 분쟁해결양해 개정(개정안 도출시한: 2003년 5월 이전) 등 상세한 시한을 설정하여 신속한 협상 종결을 도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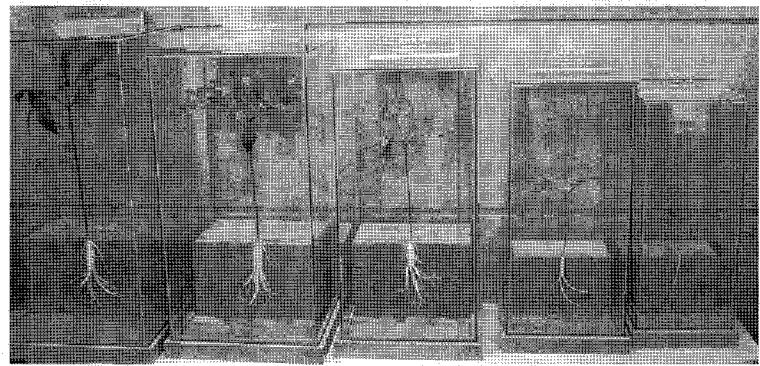
2. 협상 진전 현황

DDA 협상은 지난 2002년 초부터 시작되었다.

2002년 1월 말에 개최된 제1차 무역협상위원회(TNC)에서 7개 분야에 걸친 분야별 협상기구가 구성되고 이어서 각 기구의 의장단이 선임됨으로써 2002년 3월부터 협상그룹회의 개최를 통한 협상 노력이 본격화되었다.

7개 협상그룹 중 농업, 서비스, 환경, 지적재산권 및 분쟁해결양해 개정에 대해서는 기존 기구의 특별회의를 활용하도록 하였고, 비농산물 시장접근 및 규범에 대해서는 각각 신규 협상그룹이 설치되었다.

협상의 시작은 순조로웠던 것으



부분적으로는
국가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부분이
없지 않으나 전체적으로는
원-원 게임이 될 것이며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무역 환경 속에서
다루어져야 할
대부분의 현안들을
포괄하고 있다는…

로 평가되었으나 지금까지의 협상 진전 상황을 두고 볼 때 분야에 따라서는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분야도 있는 등 원래 정해진 시한 내 협상 타결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논의 동향에 대해서는 외교통상부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적으로 그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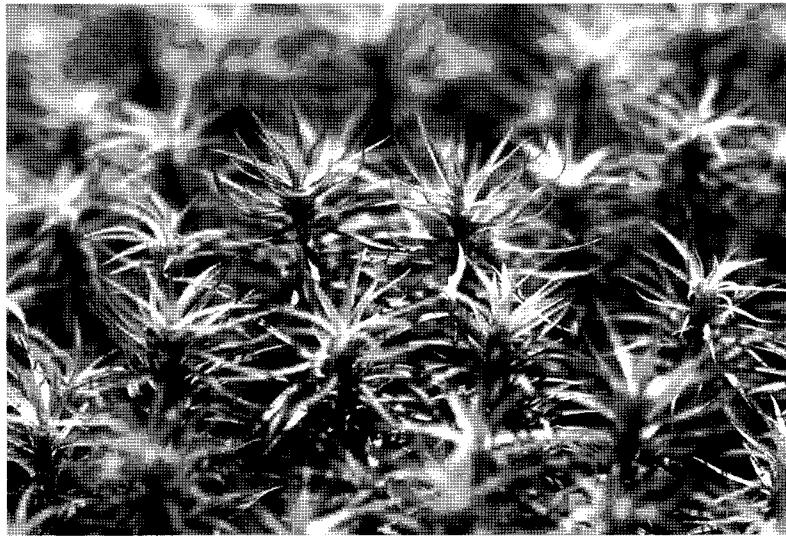
가. 농업

농업협상에서는 관세와 같은 보호장벽의 실질적 감축, 국내보조의 실질적 감축 및 수출보조의 단계적 철폐를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2003년 3월까지 결정해야 하는 그 감축방식(modalities)에 대해서는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간에 첨예한 입장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즉, 케언즈그룹(Cairns Group)을 중심으로 한 농산물 수출국들은 관세와 보조금의 대폭적이고도 급진적 감축을 요구하는 반면 한국을 포함한 일본, EU 등 수입국들은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non-trade concerns)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자유화를 추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감축방식(modalities)에 관한 의장 초안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며 3월 말까지 확정을 목표로 합의 도출에 노력할 것이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논의의 방향은 한국을 비롯한 농산물 수입국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우선 대부분의 국가들이 농업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데다 세계적으로 관세나 보조금은 점차 줄여나가는 것이 추세이다.

또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대부분의 개도국들도 농산물 무역장벽을 대폭 낮출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나. 서비스

서비스 협상은 농업 협상과 더불어 기설정의제의 하나로 합의되어 이미 2000년 2월 이후 후속협상이 개시되어 오다가 DDA 협상의 출범과 함께 DDA 협상의 일부로 편입되었다.

협상의 주요 이슈로는 시장개방 문제와 세이프가드, 보조금 등 관련 규범 수립을 위한 협상으로 나눌 수 있다.

서비스 협상의 제1단계 작업은 2001년 3월에 완료되어 협상범위와 방식, 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채택하였다.

또한 이후 2002년 6월까지 각국이 시장개방 요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 양자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하여 2003년 3월까지는 각국이 서비스 시장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개방할 것인지에 대한 1차 시장개방계획서(양허안)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 앞으로는 이에 입각한 시장개방 협상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서비스 협상은 비교적 순조롭게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지만 협상의 과정에서 대상 분야의 범

위와 개방의 폭 등을 놓고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서비스 분야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미국, EU 등 선진국은 금융, 통신, 전문직 서비스 등 폭넓은 분야의 개방을 추진하나 개도국은 이에 대해 소극적 입장을 표명하면서 특히 인력이동 분야의 자유화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세이프가드 규범의 수립에 대해서는 개도국이 적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반면 선진국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다. 비농산물 시장개방

공산품 관세인하가 핵심인 이 분야에서는 관세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감축할 것인지가 논의되고 있다. 개방의 분야, 범위, 속도를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차이를 조율하는 것이 과제이다.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개도국의 관세인하를 촉구하고 있는 반면 개도국은 섬유 등 개도국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에서 선진국의 높은 무역장벽 철폐를 요구하면서 관세 인하의 폭 및 이해기간 등에서 개도국 우대조치를 강조하고 있다.

비농산물 협상은 2003년 5월까지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감축방식(modalities)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향후 이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공산품 관세협상 방식으로는 모든 품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일정 비율의 관세를 인하하는 방식, 공식(formula)을 적용하여 품목별 관세를 결정하는 방식, 국가별로 각각의 품목에 대한 요청(request)과 제안(offer)을 통해 하는 방식 및 특정 부문에 대한 관세만 인하하는 방식 등이 사용되고 있으나 다수 국가들이 이 공식 적용방식을 중심으로 UR에서와 같은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어 공식에 의한 인하를 원칙으로 하되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무세화, 관세조화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이루 어질 가능성이 크다.

3. 주요 쟁점 사항

도하각료회의 이후 진행된 협상의 출범과정은 비교적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협상체제가 신속하게 확립되었고 분야별로 조기에 협상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후 지난 1년 동안의 협상에서는 분야에 따라 그 진전 속도에 있어 상당한 정도의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다.

서비스, 비농산물, 규범 등의 분야는 비교적 원만하게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농업, 환경, 개발 분야는 주요 그룹간 현격한 입장의 차이로 인해 협상에 있어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농업은 UR에서도 핵심 결렬

돌이었던 분야로서 농업협상의 부진은 이번에도 DDA 협상 타결의 주요 관건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이행문제와 S&D 문제 등 개도국 관심분야의 협상 부진은 이번 DDA 협상의 특징 중 하나가 개도국의 비중 및 참여 확대라는 측면임을 감안한다면 새로운 장애 요인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농업 분야의 쟁점은 관세 및 보조금의 감축방법과 범위 그리고 그 폭

‘
농업 분야의 쟁점은
관세 및 보조금의
감축방법과 범위 그리고
그 폭의 결정에 있다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대립 구도를 보이는
대부분의 다른 분야와는
달리 농업 분야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둘러싸고…’
’

의 결정에 있다.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대립 구도를 보이는 대부분의 다른 분야와는 달리 농업 분야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둘러싸고 농산물 수출국 그룹과 수입국들 사이에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구체적 쟁점분야는 농업협상의 3

대 목표에 따라 구분해 볼 수 있다.

시장접근 분야에서는 관세감축의 방식 및 폭, 저율쿼터(TRQ) 증량 및 관리방안, 그리고 특별긴급관세(SSG) 존폐여부 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또한 국내보조와 관련해서는 허용보조 범위 및 기준, 감축대상보조 감축 방식 및 폭 그리고 생산제한자의 직접지불 등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으며 수출보조 분야에서는 수출보조, 수출금융, 국영무역 등이 쟁점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을 협상함에 있어 식량안보, 농촌개발, 환경 등의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어느 정도로, 어떻게 고려하느냐 하는 문제도 두 그룹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슈가 되고 있다.

요컨대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농산물 교역자유화에 있어 대폭적인 자유화냐 아니면 점진적이고도 신축적 자유화를 지향하느냐의 차이로 이해될 수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2004년 이후 쌀 시장 개방문제는 UR 당시의 협상결과에 따라 DDA 협상과는 별도로 2004년에 다시 협상하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쌀 협상은 당초 DDA 협상과 상관없이 진행되게 되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DDA 협상과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한국이 받을 시장개방 압력은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